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

##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854 2025. 3. 21.(금) 건설환경소방위원회

#### 1. 심사경과

가. **발 의 자** : 임영은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5년 3월 4일

**다. 회부일자** : 2025년 3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25년 3월 14일

-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#### 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## 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임영은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○ 고령운전자의 신체기능 및 운전 능력 저하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증가 추세가 사회문제화 되어,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,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재정지원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 내용을 규정함(안 제4조)
-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내용을 규정함(안 제5조)
-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)
- 재정지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#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정법주 수석전문위원)

#### 가.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 적합성

- 충북은 2024년도부터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함. 이제 전국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%를 넘어서며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사회를 지나 명실상부한 초고령사회가 되었음.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역시 갈수록 늘어나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.8)
- 고령운전자의 신체 및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교통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자 각 지자체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추진 실적이 미진했던 실정임.
  - \* 충북 도내 최근 3년간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평균 비율: 1.76% (2022년: 1.9%, 2023년: 1.8%, 2024년: 1.6%)
-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와 재정 지원을 통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증진해 도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

<sup>1) &</sup>quot;충북 음주운전 줄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늘었다", 굿모닝충청(2024. 9. 25.)

<sup>&</sup>quot;서울시청역 사고 고령운전자 논란 재점화, 충북 하루 평균 4건 발생", 충청매일(2024. 7. 2.)

<sup>&</sup>quot;고령운전자 면허반납제도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", 충청타임즈(2024. 5. 15.)

<sup>&</sup>quot;충청권 고령운전자 현주소, 충청권 자진면허 반납률 저조". 충청투데이(2024. 1. 12.)

<sup>&</sup>quot;충청권 고령자 교통사고 3년 새 21%↑, 현실적 대안 절실". 대전일보(2025. 2. 3.)

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.

- 현재 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12개 시·도(강원, 경기, 경남, 경북, 대구, 부산, 서울, 세종, 인천, 전남, 전북, 충남)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.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. 「교통안전법」상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, 조례안의 제정이 「교통안전법」등 다른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음.

#### 나. 주요내용 검토

○ 본 조례안은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조 문	규 정 사 항	조 문	규 정 사 항
제1조	목적	제5조	사업(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, 홍보 등)
제2조	정의	제6조	재정지원 등
제3조	도지사의 책무	제7조	지원금의 반환
제4조	실태조사	부 칙	
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,
  -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.
  -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고령운전자"에 대한 뜻을 규정함. 「도로교통법」상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였는데, 7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지역(세종, 인천, 전남, 전북)과 비교할 때 사업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  - 안 제3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
  - 안 제4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

- 허 보유 현황, 고령운전자교통사고 현황,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함.
- 안 제5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, 교재보급 등 교육과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각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함.
- 안 제6조는 고령운전자가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7조는 안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지원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.

#### 다. 조례의 절차적·기술적 사항

- 조례안 예고('25. 3. 6.~'25. 3. 11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- 그밖에 조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, 조문 상호 간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 조문의 표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.

#### 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,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방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실태조사,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등 교육,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재정지원을 규범화함으로써

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,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기대됨.

- 다만, 본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내 고령운전자가 안전교육과 면허 반납 등 관련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동기부여 강화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. 특히 면허 반납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등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, 생계형 고령운전자에게는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(ADAS) 설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면의 정책 보완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.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략"
- 6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7. 심 사 결 과: "원안가결"
- 8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음"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음"
- 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 - 「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」 등

의안번호	제854호				
의 결	2025년	월	일		
연 월 일	(제	회)			

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임영은 의	1원 등	7인
발의연월일	2025년	3월	4일

###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(임영은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4

발의연월일: 2025년 3월 4일

발 의 자 : 임영은, 이태훈, 노금식,

김호경, 박용규, 변종오,

황영호

#### 1. 제안이유

고령운전자의 신체기능 및 운전 능력 저하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증가 추세가 사회문제화 되어,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실시,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재정지원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다.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 내용을 규정함(안 제4조)

라.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내용을 규정함(안 제5조)

마.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)

바. 재정지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#### 3. 조례안 : 붙임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협 의 :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교통철도과

라. 조례안 예고 : 예고대상(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)

####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"고령운전자"란 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고령운전자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실태조사)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고령 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  - 1.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
  - 2.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
  - 3.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
  - 4.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
  - 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
- 제5조(사업)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, 교재보급 등 교육
  - 2.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
  - 3.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·배부
  - 4. 그 밖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 -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6조(재정지원 등)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지원금의 반환)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
  - 2. 재정지원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관계법령

#### □ 교통안전법

[시행 2024. 8. 17.] [법률 제19673호, 2023. 8. 16., 일부개정]

- 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이하 "국가등"이라 한다)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 · 교육·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.
- 제9조(재정 및 금융조치) ①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 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, 재정지원 등 재정·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
  - 2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 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
  - 3. 「도로교통법」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(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) 운영자

#### □ 도로교통법

[시행 2024. 12. 27.] [법률 제19841호, 2023. 12. 26., 타법개정]

제7조의2(고령운전자 표지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안 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(이하 "고령운전자 표지"

- 라 한다)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.
- ② 고령운전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고령운 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23. 1. 3.]
- 제73조(교통안전교육) ⑤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,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 〈신설 2018. 3. 27.〉
- 1.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
- 2.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
- 3.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
- 4.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
- ⑥ 제80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및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 〈신설 2023. 10. 24.〉 [전문개정 2011. 6. 8.]
- 제80조(운전면허)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·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② 시·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  - 1. 제1종 운전면허
    - 가. 대형면허
    - 나. 보통면허
    - 다. 소형면허
    - 라. 특수면허

- 1) 대형견인차면허
- 2) 소형견인차면허
- 3) 구난차면허
- 2. 제2종 운전면허
  - 가. 보통면허
  - 나. 소형면허
  - 다.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
- 3. 연습운전면허
  - 가. 제1종 보통연습면허
  - 나. 제2종 보통연습면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 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- ④ 시·도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.
- 제87조(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)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. 〈개정 2016. 5. 29., 2018. 3. 27., 2020. 12. 22.〉
- 1.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 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(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 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,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, 한쪽 눈만 보지 못 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)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
- 2.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(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,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,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)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

는 정기(定期) 적성검사(適性檢査)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4. 1. 30.>

- 1.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
- 2.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
-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. 〈개정 2018. 3. 27.〉
- 1. 제73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
- 2. 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
-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 6. 8.]

- 제93조(운전면허의 취소·정지) ① 시·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(연습운전면 허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(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2호, 제3호, 제7호부터 제9호까지(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), 제14호,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,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(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),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.
- 20.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(失效)시킬 목적으로 시·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. 다만, 실효시 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.

##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고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# 1. 사업개요

○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운전면허 자 진 반납 시 재정지원을 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

#### 2. 비용발생 요인

-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 납 시 재정지원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
  -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, 스티커 등의 제작
  -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교통비 등을 지원

#### 3. 관련조문

O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5조, 제6조

#### 4. 비용추계 결과

- 가. 추계의 전제 :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나. 추계 결과
  - 조례 제5조(사업) : 해당없음
  -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은 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위탁 추진 ※「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교통연수원에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추진 중
  - O 조례 제6조(재정지원 등): 향후 5년간 1,616,100천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
    -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(지역화폐) 1인 10만원 지급(도비30%, 시군비70%)
    - 필요예산 : 2025년(264,700천원), 2026년(291,200천원), 2027년(320,300천원, 2028년(352,300천원), 2029년(387,600천원)

#### 〈비용추계 산출근거〉

(반납인원) 전년도 충북도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의 1.5%\* 이내 인원수 \*충북도내 최근 3년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평균비율 1.76%('22년<sup>1.9%</sup>, '23년<sup>1.8%</sup>, '24년<sup>1.6%</sup>) (면허소지자) 최근 3년간 도내 고령운전 면허소지자 비율은 매년 10%씩 증가 추세 (비용산출) 반납인원(도내 고령운전면허소지자×1.5%×10만원(교통비)×100%(도비30, 시군비70)

소요예산	264,700천원	291,200천원	320,300천원	352,300천원	387,600천원
반납인원	2,647	2,912	3,203	3,523	3,876
고령운전 면허 소지자	176,495	194,144 <sup>추정</sup>	213,558 <sup>추정</sup>	234,913 <sup>추정</sup>	258,404 <sup>추정</sup>
구 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

※ 출처 : 경찰청(「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」을 위한 '24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성과분석)

#### 라. 재워조달방안

- O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: 해당없음
- O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
  - 도비 484.830천원, 시군비 1.131.270천원

#### 5. 연도별 비용추계표 : 붙임

## 〈연도별 비용추계표〉

(단위 : 천원)

-	구 분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계
,	네 입	-	-	-	-	-	-
		-	1	1	1	-	-
서	출	264,700	291,200	320,300	352,300	387,600	1,616,100
(안 제6조)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		264,700	291,200	320,300	352,300	387,600	1,616,100
재원 조달		264,700	291,200	320,300	352,300	387,600	1,616,100
의존 재원	소 계	-	-	-	-	-	-
	보조금	-	-	-	-	-	-
	지방교부세	-	-	-	-	-	-
자체 수입	소 계	79,410	87,360	96,090	105,690	116,280	484,830
	지방세	79,410	87,360	96,090	105,690	116,280	484,830
	세외수입	-	-	-	-	-	-
시・군비		185,290	203,840	224,210	246,610	271,320	1,131,270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-	-	-	-	-	-